

강원관광대학 학생증 발급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강원관광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재학생에 관한 학생증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학생증의 발급)

1. 학생증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발급한다.
2. 학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학생에게는 재발급 한다.
3. 학생증은 학장 명의로 발급한다.

제 3 조 (학생증의 서식) 학생증의 서식은 별지 제 1호 서식과 같다.

제 4 조 (학생증의 무효 및 회수) 학생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.

1. 졸업, 퇴학 및 제적되었을 때
2. 가멸 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
3.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화된 학생증은 이를 회수한다.

제 5 조 (학생증의 사용기간) 학생증은 입학과 동시에 발급하여 이를 졸업시까지 사용케 한다.

제 6 조 (학생증재발급 신청절차) 학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하는 학생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학생증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대장비치) 학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 2호를 토대로 대장을 비치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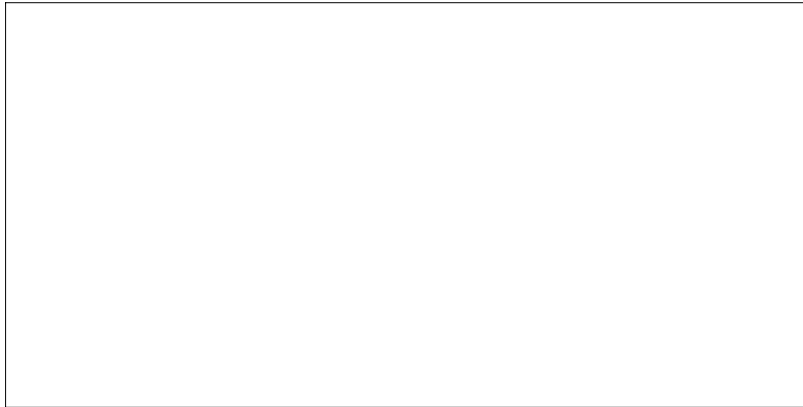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급한 학생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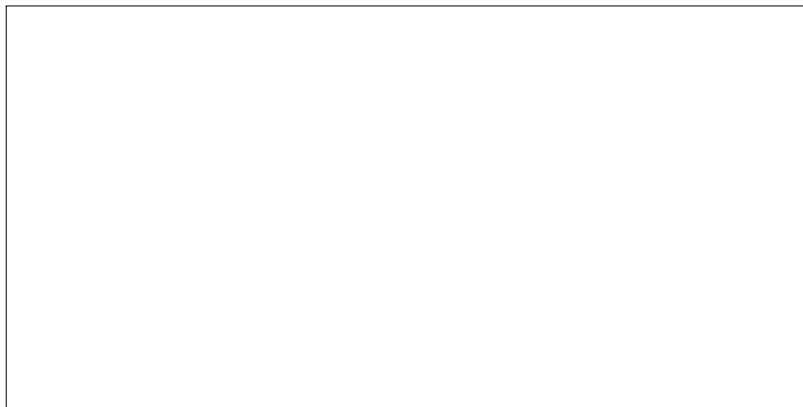
< 별지 제1호 서식 >

학생증 서식

1. 학생증 도안(서식)



① 앞면(가로 ×세로 = 3.5Cm ×8.5Cm)



② 뒷면(가로 ×세로 = 3.5Cm ×8.5Cm)

2. 학생증 용지 : 신분증 자동발급기용 Card

